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4. 5. 27 선고 2023가단1370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의 소송수계인 개인회생채무자 B

피 고 C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성준

변 론 종 결 2024. 4. 16.

판 결 선 고 2024. 5. 27.

주 문

-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7 지분에 관하여 2023. 6. 26.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7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직권으로 살펴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84조, 제406조, 제347조의 규정 취지, 집단적 채무처리절차인 개인회생절차의 성격, 부인권의 목적 등을 고려하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된 후에는 개인회생채무자가 총채권자에 대한 평등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개인회생채권자는 개별적 강제집행을 전제로 하여 개개의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141 판결 참조).

개인회생채권자가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되면,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된다(채무자회생법 제584조 제1항, 제406조 제1항). 이러한 경우 개인회생채무자는 소송을 수계할 수 있는데, 기존의 채권자취소소송은 개별적 강제집행을 전제로 하여 개개의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된 이상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므로 소송을 수계한 개인회생채무자는 기존의 채권자취소소송을 부인의 소로 변경하여야 한다.

이 사건 소송의 진행 경과는 다음과 같다.

m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는 2023. 7. 26.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였다.

m 원고는 2023. 9. 7.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2023. 9. 13.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울산지방법원 2023개회14401호).

m 원고는 2024. 2. 19. A의 소송수계인을 원고로 하여 수계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A를 수계하였다.

m 원고는 소송수계 이후에 진행된 제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부인의 소로 변경하지도 아니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A의 소송수계인으로서 기존의 채권자취소소송을 부인의 소로

변경하여야 하는데도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변경하지 않았고, 기존의 채권자취소소송인 이 사건 소는 원고에 대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된 이상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학승

별지